|  |  |  |
| --- | --- | --- |
| **종합보세구 구내기업의 국내****(구외)기업 의뢰 임가공용역** **수주 지원에 관한 공고**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28호<종합보세구의 고수준 개방과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19]3호)의 요구사항을 관철 및 실행하고 종합보세구(이하 '종합보세구')의 혁신 및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종합보세구 구내기업(이하 '구내기업'으로 약칭)의 국내(보세구외)기업(이하 '구외기업' 약칭) 의뢰 임가공용역 수주를 지원하고 국제·국내 두개의 시장과 두가지 자원을 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1. 이 공고에서 '임가공'이라 함은, 구내기업이 감독관리기간 내에 있는 면세설비를 이용하여 구외기업의 의뢰를 받아 구외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구내 반입 화물을 가공한 후 가공된 제품을 모두 국내(구외)로 반출하고 가공료를 수취하며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임가공화물이라 함은 가공을 위임받은 원자재(국내 구외로부터 반입된 비(非)보세 원자재와 구내기업의 보세 원자재 포함), 완제품, 불량품, 폐품, 부산품 및 자투리를 포함한다.1.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규정 또는 국무원 유관부서가 법률·행정법규의 수권에 의거하여 제정한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내기업은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의 임가공 업무를 전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가공 업무를 전개하는 구내기업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세관이 인정한 기업의 신용등급이 일반신용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4. 해당 업무의 전개에 필요한 장소와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가공화물과 기타 보세화물을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5. 임가공 업무를 전개하는 구내기업은 임가공 전용 전자장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임가공용 원자재는 구외기업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내기업의 보세 원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구내기업은 세관에 사실대로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7. 임가공용 비(非)보세 원자재를 국내(구외)로부터 구내로 반입 시 구외기업은 '원자재 제공 방식의 임가공(코드 1427)' 감독관리 방식과 '종합보세구'(코드 Y) 운송 방식으로 신고하고 구내기업은 '원자재 반출입'(코드 5000) 감독관리 방식과 '기타'(코드 9) 운송 방식으로 신고한다.
8. 국내(구외)로부터 구내로 반입되는 임가공용 원자재가 수출관세 과세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구외기업은 세관의 규정에 따라 세금담보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9. 임가공 완제품을 국내(구외)로 반출 시 구외기업은 '원자재 제공 방식의 임가공(코드 1427)' 감독관리 방식과 '종합보세구'(코드 Y) 운송 방식으로 신고한다. 임가공 완제품과 가공부가비용은 품목을 구분하여 열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0. 품목명칭과 품목코드 란은 임가공 완제품의 실제 명칭과 코드를 작성한다.
11. 임가공 완제품 품목의 물량은 실제로 반출되는 물량에 따라 작성하며 세금 징수·감면 방식은 '전액 면제'로 한다.
12. 가공부가비용 품목의 품목명칭은 '가공부가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정(法定) 수량은 0.1로 하고 세금 징수·감면 방식은 '규정에 따라 세금 징수'로 한다.

구내기업은 '완제품 반출입'(코드 5100) 감독관리 방식과 '기타'(코드 9) 운송 방식으로 신고하고 품목명칭은 임가공 완제품의 실제 명칭에 따라 작성한다.가공부가비용의 과세가격은 국내에서 발생한 가공비와 보세 원자재비에 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보세 원자재비라 함은 임가공 과정에서 소모된 모든 보세 원자재의 금액을 지칭하되 완제품, 불량품, 폐품, 부산품, 자투리 등을 포함한다.1. 국내(구외)로부터 구내로 반입된 임가공용 원자재의 자투리를 국내(구외)로 반출 시 구외기업은 '원자재 제공 방식의 임가공(코드 1427)' 감독관리 방식과 '종합보세구'(코드 Y) 운송 방식으로 신고하고 구내기업은 '원자재 반출입'(코드 5000) 감독관리 방식과 '기타'(코드 9) 운송 방식으로 신고한다.
2.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자투리, 불량품, 폐품, 부산품 등은 국내(구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보세 원자재로부터 발생된 자투리, 불량품, 폐품, 부산품이 고체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방법>(환경보호부·상무부·발전개혁위·해관총서·질검총국 연합령 제12호)에 따라 구외 반출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임가공 전자장부 정산(核宵) 주기는 최장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구내기업은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따라 기업의 재고, 가공 소모량 등 데이터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실제 가공 상황에 근거하여 정산(核宵)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구내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세관은 그의 임가공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5. 이 공고 제2조, 제3조에 규정된 업무 전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6. 소정의 기한 내에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자투리, 불량품, 폐품, 부산품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7. 밀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전항 제(2)호에 규정한 '소정의 기한'은 세관이 임가공계약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1. 증치세일반납세자 자격을 보유한 구내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9년 1월 29일 |  | **关于支持综合保税区内企业承接境内（区外）企业委托加工业务的公告**海关总署公告2019年第28号 为贯彻落实《国务院关于促进综合保税区高水平开放高质量发展的若干意见》（国发〔2019〕3号）的要求，加快综合保税区（以下简称“综保区”）创新升级，支持在综保区内的企业（以下简称“区内企业”）承接境内（区外）企业（以下简称“区外企业”）委托加工业务，统筹利用国际国内两个市场、两种资源，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一、本公告所称“委托加工”，是指区内企业利用监管期限内的免税设备接受区外企业委托，对区外企业提供的入区货物进行加工，加工后的产品全部运往境内（区外），收取加工费，并向海关缴纳税款的行为。　　委托加工货物包括委托加工的料件（包括来自境内区外的非保税料件和区内企业保税料件）、成品、残次品、废品、副产品和边角料。　　二、除法律、行政法规、国务院的规定或国务院有关部门依据法律、行政法规授权作出的规定准许外，区内企业不得开展国家禁止进出口货物的委托加工业务。　　三、区内企业开展委托加工业务，应当具备以下条件：　　（一）海关认定的企业信用状况为一般信用及以上；　　（二） 具备开展该项业务所需的场所和设备，对委托加工货物与其它保税货物分开管理、分别存放。　　四、区内企业开展委托加工业务，应当设立专用的委托加工电子账册。　　五、委托加工用料件原则上由区外企业提供，对需使用区内企业保税料件的，区内企业应当事先如实向海关报备。　　六、委托加工用非保税料件由境内（区外）入区时，区外企业申报监管方式为“出料加工”（代码1427），运输方式为“综合保税区”（代码Y）；区内企业申报监管方式为“料件进出区”（代码5000），运输方式为“其他”（代码9）。　　七、境内（区外）入区的委托加工用料件属于征收出口关税商品的，区外企业应当按照海关规定办理税款担保事宜。　　八、委托加工成品运往境内（区外）时，区外企业申报监管方式为“出料加工”（代码1427），运输方式为“综合保税区”（代码Y）。委托加工成品和加工增值费用分列商品项，并按照以下要求填报：　　（一）商品名称与商品编号栏目均按照委托加工成品的实际名称与编码填报；　　（二）委托加工成品商品项数量为实际出区数量，征减免税方式为“全免”；　　（三）加工增值费用商品项商品名称包含“加工增值费用”，法定数量为0.1，征减免税方式为“照章征税”。　　区内企业申报监管方式为“成品进出区”（代码5100），运输方式为“其他”（代码9），商品名称按照委托加工成品的实际名称填报。　　加工增值费用完税价格应当以区内发生的加工费和保税料件费为基础确定。其中，保税料件费是指委托加工过程中所耗用全部保税料件的金额，包括成品、残次品、废品、副产品、边角料等。　　九、由境内（区外）入区的委托加工剩余料件运回境内（区外）时，区外企业申报监管方式为“出料加工”（代码1427），运输方式为“综合保税区”（代码Y），区内企业申报监管方式为“料件进出区”（代码5000），运输方式为“其他”（代码9）。　　十、委托加工产生的边角料、残次品、废品、副产品等应当运回境内（区外）。保税料件产生的边角料、残次品、废品、副产品属于固体废物的，应当按照《固体废物进口管理办法》（环境保护部、商务部、发展改革委、海关总署、质检总局联合令第12号）办理出区手续。　　十一、委托加工电子账册核销周期最长不超过一年，区内企业应当按照海关监管要求，如实申报企业库存、加工耗用等数据，并根据实际加工情况办理报核手续。　　十二、区内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可暂停其委托加工业务：　　（一）不再符合本公告第二条、第三条所述业务开展条件的；　　（二）未能在规定期限内将委托加工产生的边角料、残次品、废品、副产品等按照有关规定处置的；　　（三）涉嫌走私被立案调查、侦查的。　　前款第（二）项所规定的“规定期限”由海关根据委托加工合同和实际情况予以确定。　　十三、区内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企业，按照有关规定执行。　　本公告自发布之日起施行。　　特此公告。　　海关总署　　2019年1月29日 |